기획재정부 **보 도 자 료**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1. 3.(화) 11:30	배포 일시	2023. 1. 3.(화) 09:30

담당 부서	복권위원회사무처 발행관리과	책임자	과 장 강준희 (044-215-7830)
		담당자	사무관 최성진 (csj3939@korea.kr)

연 18만명의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
- 200만원 이하 복권당첨금 2023년부터 비과세 -

□ 2023년부터 **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 상향***(5만원→200만원)으로 로또복권 3등 15만명, 연금복권 3·4등 2.8만명 등 **연간 18만명 이상**의 **당첨금 수령이 편리**해질 것으로 기대됨

*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이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

○ 그간 5만원 ~ 200만원 사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**개인 정보를 제공**(지급명세서 작성)해야 했으나, **금년부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** 곧바로 은행을 방문하여 **당첨금 수령 가능**

○ 이처럼 복권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**금년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**으로 예상됨

< 5만원 ~ 200만원 복권당첨금 수령 절차 >

구분	종 전		현 행
■ **실물복권** (로또복권·연금복권 판매점 판매분, 즉석식복권)	▲농협방문 + 당첨복권 제시 + 지급명세서 작성(개인정보 제공) +당첨금 수령		▲농협방문 + 당첨복권 제시 +당첨금 수령
■ **인터넷복권** (로또복권 인터넷 판매분)	▲농협방문 + 복권번호 제시 + 지급명세서 작성(개인정보 제공) +당첨금 수령	➡	▲예치금으로 수령
(연금복권 인터넷 판매분, 전자복권)	▲실명 인증(개인정보 제공) + 예치금으로 수령		▲예치금으로 수령

□ 금번 소득세법 개정은 **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**되어,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되었어도 **2023년 1월 1일 이후 청구 시 비과세 혜택**을 받을 수 있음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